

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(국가 순서별)

2020.10.23.(금) 10:00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- ※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.13.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(Visa)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1	가나	▶ 9.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(8.30.)(단,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) ※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(미소지 시 △외국인의 경우 입국거부, △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) ※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(검사비용 자부담)하여 △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, △양성인 경우 지정병원에서 관리 - 주재국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(동반 가족 포함)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조건으로 신속 진단키트 검사 면제 가능
2	가봉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9.) ※ 가봉 거주자, 외교관의 경우 입국에 제한이 없으며, 항공기 탑승 5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소지(에티오피아 항공은 탑승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함) ※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※ 한국, 중국, 미국,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(3.13.) ※ 3.20.부터 육로·해로·항공 국경 봉쇄, 7.1.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재개방
3	가이아나	▶ 국제선 운항중단(4.3.부터) ▶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(7일 이내) 및 7일 자가 격리(△음성 결과를 대기 중인 입국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, △유증상 시 정부 지정 기관 격리)
4	감비아	▶ 10.31. 반줄 국제공항(BIA) 운영 재개 예정 ※ 입국 시,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판정서 필요(10.10.)
5	과테말라	▶ 9.18.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(9.10.) ※ (항공 입국) △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하고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(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) 제출 필요, △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(https://sre.gt)에서 건강상태확인서(Health Pass) 온라인 작성 후 확인, △체온 검사, △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※ (육로 입국)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과테말라 도착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(단,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),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기 작성
6	그레나다	▶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8.1.) ※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(http://covid19.gov.gd)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※ 영국,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
7	기니	▶ 7.17.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,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 검사 방식) 제출 의무 ※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※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(INSP)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
8	기니비사우	▶ 입국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건강상태,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 ※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 ※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
9	나미비아	▶ 9.1.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※ 관광 목적 외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나 사전 비자 취득 필수 (도착비자 발급 불가) ※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※ (단기 방문객)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(단,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 또는 발급 7일 이내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에서 격리 필요) (장기 체류자)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 검사 또는 시설격리(양성 판정자)
10	나우루	▶ 모든 여행객은 호주(빅토리아주 제외), 뉴질랜드, 태평양 도서국(14개국)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(7.24.) ※ △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, △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, △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, △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※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격리,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11	나이지리아	▶ (입국 전) △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(72시간 이내 검사 권장)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(http://nitp.nodc.gov.ng)에 결과 입력 필요(9.5) △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▶ (입국 시)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▶ (입국 후) △도착 후 7일간 자가 격리(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)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 △재검 결과 음성 판정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
12	남수단	▶ 외국에서 항공을 통한 입국 시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 제출 필요(5.6.) ※ 상세 소지 필요 서류는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※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※ 육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(3.24~)
13	남아프리카공화국	▶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(10.1.) ※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(자부담) ※ △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, △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, △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(자부담)
14	네팔	▶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※ 9.1.부터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, 기타 네팔 정부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하여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
15	노르웨이	▶ 역외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(5.15.) ※ EU/EEA/스겐 국가 중 고위험 국가(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상인 국가)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10일간 자가 격리 조치(7.10.)
16	뉴질랜드	▶ 3.19.부터 외국인* 대상 입국금지(3.19.) * 임시 비자 소지자(학생, 임시 노동자 등), 여행객 ※ (오克蘭드 국제공항 경유) 6.19.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(NZeTA)를 발급받아야 하며,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-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(예: 승인(Confirmed) 상태의 환승비자 등)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※ 4.9.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(4.9)
17	니우에	▶ 4.1.부터 자국 거주민(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)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※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※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
18	니제르	▶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※ 유증상 시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자기격리 권고(단, 출장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기격리 불요하나 방역 조치 준수)
19	니카라과	▶ 9.19.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(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불가) ▶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(단,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) ※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'RT-PCR' 또는 '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' 표기 필요 ※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
20	대만	▶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(친구 방문, 결혼식 참석, 문화활동 참석 등)의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6.24.) ※ 6.29.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-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(영문본) 항공사에 제출 필요(단,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) -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'입경 검역시스템(https://hdhq.mohw.gov.tw/)'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- 입국 후 14일간 자기격리(단기 방문 기업인 격리기간 단축 가능 14일→7일) ※ 6.25.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, 에바항공, 케세이퍼시픽항공 계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(6.24.) -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- 단,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※ 외국인 유학생(졸업예정자, 재학생,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) 입국 가능 (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)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(대만 입경 후)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 →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 → 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기격리 실시
21	덴마크	▶ 한국을 포함한 안전국가(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0명 이하인 국가)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※ 입국 시 안전국가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(출입국사실증명서 등) -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하나,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
22	도미니카공화국	▶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 신속 검사 후,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 ▶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
23	독일	▶ EU+ 역외국가 국민 원칙적 입국 금지(6.15.) ※ 7.2.부터 EU+ 역외국가 전체 대상 입국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였으며,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 가능(주한독일대사관 공지 참고) - △독일 국적자, EU시민, 독일 내 장기체류 자격을 보유한 제3국적자, △보건인력, 보건 연구원, 요양원 인력, △독일 입국이 필수적인 해외전문인력 및 유능한 피고용인, △운송인력, △농업 분야 계절노동자, △선원, △외국에서 학위를 마칠 수 없는 학생, △동반가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시급한 가정사로 방문하는 자, △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, △외교관, 국제기구 인력, 군인, 인도주의 조력자, △종전 후 독일로 돌아온 이주민, △독일 경유자, △유학생 중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출석의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대학 측 확인서를 지닌 신입생 및 교환학생, △박람회 방문을 위한 출장용 입국(관련 서류 필요), △기숙학교 입학자(최소 6개월 이상 거주), △출장자 단기방문(관련 서류 필요) ※ 단, 사안별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 추진 단계에서 주한독일대사관 및 독일 연방 경찰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필요 ※ 10.1.부로 위험지역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기격리 제도 변경 - 입국자의 14일간 자기격리 의무에 대한 관리 강화(입국 1일 이내 건강상태 신고서 관할 보건소 전달 등)
24	동티모르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 ※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,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(5.30.) ▶ 4.4.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(4.3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
25	라오스	▶ 10.31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10.1) ※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 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(RT-PCR만 인정) 지참 필요 -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※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(상세내용 주라 오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
26	라이베리아	▶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(6.27.) ※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△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, △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※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
27	러시아	▶ 9.27.부터 한국(인천)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-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(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) ※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영문 또는 노어) 제출 필요 ※ 학생비자 및 노동·상용비자(HQS 포함)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※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▶ 3.30.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, 철도, 도보, 하천 등 이동제한 ※ △영주권자, △외교공관, △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, △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,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,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
28	레바논	▶ 7.1.부로 국제공항 운영 재개 및 입국제한 완화 ※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탑승 시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(미제출 시 탑승불가,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) ※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://arccg.is/0GaDnG에서 건강확인서 출력 및 작성 필요 ※ 입국 후 72시간 내 PCR 검사 추가 수행하거나 자가 또는 호텔에 10일 격리 ※ 이라크·시리아·터키·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(12세 이하 승객, UNIFIL 및 레바논 주재 외교관은 검사 의무 면제) - (시리아·터키·아프리카 국가) 입국 후 48시간 동안 자가 격리,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 해제 - (이라크) 입국 후 72시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자가 격리,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(단, 레바논 국적자 또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정 호텔 외 시설에서 격리 가능하며, 그 외 입국자는 지정 호텔을 예약하지 않을 경우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 불가) ※ 예외 : △1주일 내 기간으로 여행 후 레바논에 재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출발 시의 검사 의무 면제, △입국 후 48시간 이내 출국하는 승무원의 경우 검사 의무 면제(단, 레바논 체류 기간 동안 지정 호텔에서 격리)
29	르완다	▶ 8.1.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(7.29.) ※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은 △항공기 탑승전 120시간 내 코로나19 검사(PCR)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120시간 전 www.rbc.gov.rw에 접속하여 입국 관련 정보(성명, 여권번호, 항공편 등)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(입국자의 경우 예약한 호텔명 입력) ※ 르완다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 키갈리 소재 17개 지정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격리(르완다에서 지정된 호텔에 사전 예약, 비용 자부담)
30	리비아	▶ 입국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
31	리투아니아	▶ EU차원의 국경통제 해제 권고 역외국가(한국 포함)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완화 ※ 단,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25명 초과 발생 시 입국 불가하며 경유지 체류(환송 목적 입국 포함) 후의 입국은 불허될 수 있음 ※ 모든 입국수단(항공, 차량 등) 탑승 전 홈페이지(keleiviams.nvsc.lt/en/form)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,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
32	마다가스카르	▶ 3.20.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(3.18.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10.1.부로 노시베 국제공항 운영 재개(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소지 관 광객에 한정, 타지역 이동 불가)
33	마셜제도	▶ 모든 국제 여행객의 입국 금지 10.5까지 연장(9.4.) ▶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6.5.)
34	마이크로네시아	▶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(5.4.)
35	마카오	▶ 3.18.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※ 자국민,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(8.7.) ※ 외교관, 정부대표단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
36	말라위	▶ 9.1.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 발표(8.27.) ※ △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(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) 발급된 코로 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(미지참 시 입국 거부), △입국 후 14일간 의무 적 자가격리, △관련 증상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※ 단수비자(도착비자) 발급 재개
37	말레이시아	▶ 3.18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별도 공지시까지) ※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 (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이지 참고) 가.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- 3.18. 이후 출국한 △영주권 소지자, △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- 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 - 외교관 - (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) 취업비자-Caterogy 1-2-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 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, △전문가 방문 비자(Professional Visit Pass) 소지 자, △취업비자 및 거주비자-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(18세 이상 자녀, 부모 등) 소지자(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 인 필요),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(한국 포함 6개국)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 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(출국 후 재입국)가능 - (외국인 학생) 10.8일부터 12.31까지 외국인 학생비자(대학생) 소지자 한시적 입국 금지(10.4) 나.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(DGIM)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(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) 가능(공무사업·긴급한 사유·치료 목적) ※ 7.24.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 리(자부담)(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
38	말리	▶ 7.25.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※ (입국 요건) △건강상태신고서 작성, △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 리 후 검사 진행 /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(비용 자부담) ※ (출국 요건) △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, △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△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 공기 탑승 가능 ※ (경유 요건) △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PCR검사 방식) 제출, △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, △발열 체크, △숙 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
39	멕시코	▶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※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, △경증시 자가격리, △중증시 입원조치 ▶ 11.21.까지 멕시코-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
40	모로코	▶ 10.1.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추가 완화 ※ 기존 입국 시 필수요건이었던 항체검사 폐지(10.1.) ※ △우리 기업인/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,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 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△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, ②모로코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 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-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※ 관련 상세 사항은 주한 모로코 대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
41	모리셔스	▶ 10.1.부터 자국민, 영주권자,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, 장기 여행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국경 개방 -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, 격리 7일차·14일차에 PCR 검사 실시 - 장기 여행자의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, 14일 의무격리를 위해 지정된 호텔의 숙박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 구매 증빙서류 소지 필요
42	모리타니아	▶ 9.10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※ 기존의 입국 요건(비자 발급 등)에 더해 입국 시 △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(제공 양식 사용) 제출, △모리타니아 내 보건지침 준수, △입국 시 체온측정 협조, △입국 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(필요 시 도착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협조) 필요(9.9.) ※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보건팀 조치에 따라 협조 ※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
43	모잠비크	▶ (비자) △입국 비자 발급 중지 및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(단 기술 이전, 봉사 활동, 프로젝트, 인도주의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비자 발급 가능) ※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 대상 체류기간 기산 잠정 정지 ▶ (검역) △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, △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, △자가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(자비 부담, 제출 불가 시 자가격리 4일 연장)
44	몰도바	▶ 8.31.부터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(한국 포함)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허용(단,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 가능) ※ 확진자 50명 이상인 Red List 국가(우크라이나, 루마니아, 미국, 스페인, 프랑스 등 60개국)에서의 입국 불허 - 예외 : 몰도바 국민의 부모·자녀·배우자, 장기비자·거주허가·근로허가 소지자, 유학생, 교사, 단순 경유자, 몰도바 기업 초청장·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 내 근로예정자,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등(유증상 시 자가격리) *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 부담으로 진행
45	몰디브	▶ 7.15.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※ △입국 전 사전에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필수(체류 기간 중 동일 시설에서 머물러야 함), △공항에서 발열체크, △입국 시 72시간 전 시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, △유증상인 경우 PCR검사(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), △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▶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
46	몽골	▶ 10.31.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(환승) 금지(9.14.) ※ (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)△외교단·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, △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, △운송 분야 종사자, △외교(D)·관용(A) 및 상용(B)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※ 모든 입국자 대상 총 21일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, 시설격리 기간 중 총 3회 PCR 검사 시행 -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▶ 10.31.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(9.14.) ※ 단,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
47	미국	▶ (사이판) (입국자 전원) 코로나19 음성확인서(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*)를 반드시 제출,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(비거주자의 경우 1박당 \$400 자부담) *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, 검사수행기관명, 검체수집일(입국 3~6일 이내), PCR 검사 실시 여부, 검사 결과 필수 포함 ※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*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(Mandatory Declaration Form) 작성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*www.governor.gov.mp/covid-19/travel ※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※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(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\$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) ※ (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※ (비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※ (기타)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(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) -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(www.cisa.gov/critical-infrastructure-sectors)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,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(cnmihealthofficial@chcc.gov.mp)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▶(괌) 출발지역, 체류기간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※ 9.26.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,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▶(하와이) 11.30.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(10.13.) - 단, 10.15.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(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국 등)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자 격리면제 프로그램(Pre-Travel Test Program) 시행 -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, 카우아이섬,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,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▶(푸에르토리코)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,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(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) ※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,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(비용 자부담) ▶(미국령 사모아)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△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, △건강검진서 제출, △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(3.24.) ▶(하와이주) 11.30.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(10.13.) - 단, 10.15.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(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국 등)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자 격리면제 프로그램(Pre-Travel Test Program) 시행 -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, 카우아이섬,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,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▶(뉴욕주) 美CDC가 2-3단계 국가(한국 포함)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,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(traveler health form)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(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) ▶(로드아일랜드주) Travel Screening Form,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△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△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▶(매사추세츠주)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(위반 시 벌금 부과) ※ △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△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▶(메인주)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△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△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▶(버몬트주)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△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, △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▶(알래스카주)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(비용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\$250)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(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면제) ※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요 (입국 후 5-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(선택사항)) ▶ (코네티컷주) 美CDC가 3단계로 분류한 국가(한국 포함)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 정보 작성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(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) ※ 단,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면제
48	미얀마	▶ 3.25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) 제출 의무 부과(3.24.) ※ 미얀마와 인접 국가*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(3.19.) * 중국, 태국, 인도, 라오스, 방글라데시 ▶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·자가 격리 기간 28일(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 격리)로 확대 시행(4.11.) ▶ 외교관, 유엔관계자,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(3.29.) ※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(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)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※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, 교통통신 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▶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(6.19.) -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-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-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,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-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 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▶ 10.31.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(9.24.)
49	민주콩고	▶ 8.15.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※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, 검역문진표 작성
50	바누아투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0.) ※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운항 중단(7.14.)
51	바레인	▶ 9.4.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※ 단,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- 바레인 국민, 거주하거증 소지자,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, 유효한 eVisa 소지자, 외교관, 군인, 승무원, 공무원, 및 UN관계자(상세 사항 www.evisa.gov.bh) ※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(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10일째 코로나19 재검사)
52	바베이도스	▶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9.24.) ※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(www.travelform.gov.bb)에서 입국카드(ED)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(immigration.embarkation@barbados.gov.bb) 제출
53	바하마	▶ 10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도착 시 발열 검사 및 14일 격리(투숙호텔) ▶ 11.1.부터 탑승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도착 후 96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 예정(10세 이하 신속 검사 면제)
54	방글라데시	▶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,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필요(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)(3.23.) ※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(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) -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음성확인서(영문) 제출 의무(단, 10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)(3.23.) ※ 3.23.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(3.23.)
55	베냉	▶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, △ 입국 즉시 1차 검사(입국시 여권 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,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 가능), △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, △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※ 환승·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
56	베네수엘라	▶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(3.18.) ※ 베네수엘라 출입국 모든 외국인은 72시간 전 베네수엘라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통지 필요(3.18.) ※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(PCR) 실시(△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15일 자발 적 자가격리, △양성 판정 시 의무 격리)(4.5.) ▶ 11.12.까지 항공편 운항 중단 연장
57	베트남	▶ 3.22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1.) ※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(중요 대외활동 참석, 전문가, 기업 관리 자 및 고급 기술인력) 제외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-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, △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/등록, △검역설문 지 작성 및 제출, △베트남 입국 3-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 인서 제시, △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, △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(8.3.) ※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(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)
58	벨라루스	▶ 10.15.부터 벨라루스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 성확인서(영어 또는 러시아어, 성명 기재 필수) 지참 의무(단, 벨라루스를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, 항공권 소지 필요) ※ 한국 포함 38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(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 - 상기 38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 격리 실시(격리기간 중 원격모니터링 시행)(10.21.) ※ 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 체류한 경우에는 최초 출발국에서 출발한 것으 로 간주, 24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에서 출발한 것으로 처리
59	벨리즈	▶ 10.1.부터 항공 운항 재개 ※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 인서 제출 필요,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(15일)
60	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	▶ 9.12.부터 48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를 소지하는 경우 입국 허용
61	보츠와나	▶ 세계보건기구(WHO)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(3.28)
62	볼리비아	▶ 9.1부터 항공편 이용 입국 가능(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) ※ △체류국 내 볼리비아 대사관·영사관에서 입국허가 신청, △볼리비아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볼리비아 대사관·영사관 인증 필) 제출 ※ 육로 및 해로 국경은 △볼리비아 국민, △거주자격 소지 외국인, △외교관, △ 국제기구 직원, △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및 전문가 등만 예외적으로 입국 가 능하며, 일반 외국인 입국 불가
63	부룬디	▶ 8.17.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도착 72시간 전 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판정서 제출 필요 ※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7일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
64	부르키나파소	▶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(7.28.) ※ △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, 입국일로부터 8일째,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, △코로나19 유증상자(체온 38도 이상)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 ※ 음성확인서 미소지 승객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 정 시설 격리
65	부탄	▶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(3.6.)
66	브라질	▶ 7.29.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추면 항공을 통한 외국인 입국 허용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▶ 우리 국민의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 ▶ 육상 및 해상(또는 수상)을 통한 입국제한 재연장 및 일부 육로 입국 허용(10.14부터 30일간) ※ 육로 -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. 사전에 항공권 지참,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및 입국 후에는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-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(포즈 두 이과수, 폰타 포라, 문두 노부)에 대해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※ 수, 해로: 의료지원의 경우/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송의 경우 입국 허용
67	브루나이	▶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(3.24.) ※ △필수 비즈니스 여행(공무 여행 포함), △학업, △치료, △브루나이 국민·거주자의 부모, 배우자,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(9.15.) -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- 여행자는 △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, △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, △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-14일*간 의무 자가격리, △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* 격리기간은 입국 시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※ 육로로 브루나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(브루나이 경유 운전자, 운송업자 등) 대상 입국 시 육상 국경통제소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(검사결과는 검사 일로부터 7일간 유효)제출 의무(10.1) ▶ 브루나이-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실시(9.1.) ※ 국적불문,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 가능 - △출발 전 14일동안 출발국가 체류, △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결과 제시, △시간대별 여행일정 제출, △BruHealth 앱 설치, △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대기 동안 격리 등 보건조치 필요
68	사모아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1.) ※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
69	사우디	▶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※ 단, 유효한 Exit and Re-entry비자, 취업비자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예외(9.15.) -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- 관련 내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
70	상투메프린시페	▶ 7.16.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(항공 및 선박) 허가 ※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,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
71	세네갈	▶ 7.15.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※ (항공기 탑승조건) -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(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) ※ (공항 입국 조건) -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(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) -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(증상 여부, 출발지, 경유지, 경유지 체류 시간 등)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
72	세이셸	▶ 32개국* 대상 입국 허용(10.1.) * 오스트리아, 호주, 캄보디아, 캐나다, 중국, 사이프러스, 덴마크, 이집트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독일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리히텐슈타인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말레이시아, 모리셔스, 모나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파키스탄, 포르투갈, 카타르, 싱가포르, 한국, 스리랑카, 스웨덴, 스위스, 태국, 베트남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73	세인트루시아	▶ 7.9.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※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(www.stlucia.org)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, 체류할 호텔명 제출 ※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,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※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,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-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(자비 부담)
74	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	▶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5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10.1.) ※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 ※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(https://stv.servicedx.com/travelform)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,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 필요 (coronavirustaskforcesvg@gov.vc)
75	세인트키츠네비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-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,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
76	솔로몬제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1.) ※ 2021.1.10.까지 솔로몬 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(10.1.)
77	수단	▶ 모든 국제선 운항 재개(국가보건비상사태는 유지) ※ 국적과 상관없이 6세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공인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, 입국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에서 면제
78	수리남	▶ 10.12.부터 10.26.까지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 조치 비정기적으로 변동
79	스리랑카	▶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(3.22.) ※ 공항 안에서 머무르는 조건으로 12시간 내의 환승 허용 ※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비자의 효력 중단, 신규 비자발급 중지 ※ 외국인의 경우 필수 비즈니스 목적 등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(단,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스리랑카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- 스리랑카 관계 기관을 통해 예외적 입국허가 신청·발급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필요 - △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, △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, △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재실시, △이후 2주 자가격리
80	스웨덴	▶ EU+ 역외국가 중 한국, 호주, 조지아, 일본, 캐나다, 뉴질랜드, 르완다, 태국, 튀니지, 우루과이를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※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'체류 국가'에 따라 적용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의무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(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) ※ 단, 그 외 EU+ 역외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10.31.까지 연장
81	스페인	▶ 7.4.부터 한국 포함 10개 EU+ 역외국가* 대상 입국 제한 완화(7.3.) * 한국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뉴질랜드, 르완다, 태국, 튀니지, 우루과이 ※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,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(최대 90일)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 여행 48시간 전까지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, 도착 시 QR 코드 제시(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), ② 발열 체크, ③ 대면 심사
82	시에라리온	▶ (입국 전)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(Traveler's Authorization)* 제시 * △코로나19 음성확인서, △시에라리온 여행포털(www.travel.gov.sl)에 게시된 Passenger Locator Form, △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(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)(7.17.) ▶(입국 후)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,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 ※ 간이검사가 △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, △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
83	싱가포르	▶ 3.24.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※ 단, 최근 14일 브루나이·뉴질랜드·베트남·호주(빅토리아주 제외)에 지속 체류한 경우 단기 방문 허용(입국 전 사전 신청 필수, 상세 절차 관련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 ※ 일부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의 경우 제한적으로 경유 허용(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) ※ 3.30.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(2주간 유효) 제출 의무(3.29.) -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(비용 자 부담),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※ 8.29.부터 싱가포르 국적자·영주권자는 △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(비용 정부 부담), △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(비용 자부담) ※ 8.29.부터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△14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△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시행(비용 자부담)
84	아랍에미리트	▶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(7.1.) ※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△재입국용 포털사이트(uaeentry.ica.gov.ae)에서 신분증 번호, 여권 번호 등 입력, △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, △입국 후 자가진단앱(AI Hosn)을 다운받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,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※ (두바이) 7.7.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-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- 8.1.부터 두바이에 도착하거나 두바이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-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(GDRFA)의 사전 승인 필요,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(ICA) 승인 필요 - (경유) △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(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), △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※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- 9.9.부터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△방문비자 소지자는 14일간 아부다비 진 입 불가, △아부다비 거주비자 소지자는 접경 지역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주재국 정부 제공 시설에서 대기 후 14일 격리(시설 또는 자가)
85	아르메니아	▶ 외국인의 항공 입국 허용, 육로 입국 제한 유지(9.10.) ※ 9.11.부터 국가비상사태 종료 ※ 육로 입국은 금지(단, △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, △외교단·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, △해당 국가의 방역 상황에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이 허가된 자의 경우 예외) ※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 - 재외공관 및 e-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 ※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감염검사 실시 -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14일 자가격리 조치(자가격리 기간 중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86	아르헨티나	▶ 10.25.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10.9.) ※ 3.20.부터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30일씩 체류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으며, 그 후 만료되는 무비자 및 장기체류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간 연장
87	아이슬란드	▶ 한국 포함 10개 국가* 대상 입국 허용(7.16.) * 한국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뉴질랜드, 르완다, 태국, 튀니지, 우루과이 ※ (필요서류) △유효한 여권, △한국 내 거주중임을 증빙하는 서류(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), △한국에서 출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항공권 등) ※ 입국 전 사전 등록 필요, 아이슬란드 도착시 ①코로나19 진단검사(PCR) 실시 후 5-6일간 의무 자가격리 및 재검사(비용 자부담), ②14일 의무 자가격리 중 선택
88	아이티	▶ 발열체크(현장에서선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제출) 및 연락처 제출
89	아일랜드	▶ 모든 입국자(북아일랜드 및 이동제한 면제국*(한국 미포함) 제외) 대상 14일간 이동제한(한 곳에 머물며 가능한 한 타인과의 접촉 피할 것) 권고 * 이동제한 면제국(Green List)(9.28.) : 사이프러스, 핀란드, 라트비아, 리히텐슈타인 ※ 입국 전 '승객위치질문서(Passenger Locator Form)' 온라인 작성 제출
90	아제르바이잔	▶ 11.2.까지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※ 단,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가능 -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(외교관,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) - 10.1 현재 아제르바이잔-아르메니아 국경지역(나고르노-카라바흐) 전쟁으로 인해 국제선은 바쿠-이스탄불 구간만 운항
91	알제리	▶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5.28.) ※ 단,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-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,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(8.1.) - 14일간 자가격리 필요(비용 자부담)
92	앙골라	▶ 9.9.부터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내국인, 외국인 체류자(영주권자, 외교관, 투자, 유학, 노동비자 소지자 등) 출입 허용 ※ 단기 방문객(여행, 상용)은 입국 불가 ▶ 9.21.부터 일부 국제선 운항 재개(단, 루안다 봉쇄는 유지)(9.8. 대통령령 발표) ※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 소지 - 출국자의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(우리 국민의 경우 출국 시 음성확인서 불요하나, 두바이 경유 시 동 확인서 필요) ※ 9.29.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covid19.gov.ao)에 입국 관련 정보(RT-PCR 음성확인서 포함) 등록 필요(9.29. 대통령령 발표) ※ 8.15.부터 내국인 및 거주 입국자는 자가격리(앙골라 입국 전 출발국에서 실시한 RT-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, 앙골라 보건 당국에서 요청하는 자가격리 책임 동의서 서명 필수) - 단, 보건 당국 판단에 따라 시설 격리 또는 보건부 승인을 받은 호텔에서 격리가 가능하며, 앙골라 비거주 외국인 입국자(코로나19 음성확인자)의 경우 시설격리 -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7일 후 RT-PCR 음성 판정 확인서와 함께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퇴소확인서 수령 후 격리 해제 가능
93	앤티가바부다	▶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▶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
94	에리트레아	▶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(3.25.)
95	에스와티니	▶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(한국 제외)*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(10.1.) * 브라질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프랑스, 인도, 이라크, 이스라엘 미국, 영국, 등 ※ 입국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-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, 코로나 유증상시 코로나 검사(자비 부담) 및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(10.1)
96	에콰도르	▶ 8.15.부터 입국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를 소지하고, 도착 시 무증상인 경우 의무 격리 면제 ▶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으나 도착 시 유증상인 경우 입국 시 PCR 검사(자부담) 후 임시 숙소에서 10일간 의무 격리(유증상자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의 경우 최소 3일 추가),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※ 증상은 발열, 몸살, 근육통, 관절통, 미각 상실, 기침, 두통, 설사 등 포함
97	에티오피아	▶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(120시간)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 진단검사 명시 필요) 제출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(단, 10세 미만 어린이와 경유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)(10.5.) ※ 외교관·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7일,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 ※ 경유승객은 공항 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(20미불),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(7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추가 50미불 지불)
98	엘살바도르	▶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,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 ※ 외교관, 항공 승무원,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
99	영국	▶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(Passenger Locator Form) 제출 ▶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※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
100	오만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(경유 제외) ※ 단, △소속 회사, △대사관, △국영항공사(Oman Air 및 Salam Air)를 통해 오만 외교부에 입국 허가를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 - 외국인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입국자는 「Tarassud Plus」 앱 다운로드 및 위치추적 스마트 밴드 구입(5리알), △오만 내 유효한 여행자 보험 가입 - 외교관의 경우 상기 규정 예외, 14일 자가격리 의무
101	온두라스	▶ 8.17.부터 4개 국제공항* 및 모든 육로국경**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(단,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금지 가능) * Tonconin(테구시갈파), Ramon Villeda Morales(산페드로술라), Juan Manuel Galvez(로아탄), Goloson(세이바) 국제공항 ** 6~18시 콰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 국경 ※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 ※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(https://prechequeo.inm.gob.hn)를 통해 입국 신청 ※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(PCR 또는 특이도(specificity) 85% · 민감도(sensitivity) 98% 이상의 신속검사) 음성결과서 제출(경유 입국자의 경우,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) ※ 입국 후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, 현재 발효 중인 통행금지로 이동이 제한됨 - 슈퍼마켓, 은행 등 필수 상업시설은 여권 뒷자리에 따라 대략 2주에 1일 이용할 수 있음 - 숙박예약 내역서, 패키지여행 구매 내역서, 교통수단 탑승권, 자동차 렌트 내역서 등을 소지하거나 온두라스인이 신청하는 특별통행허가증에 동행인으로 등록하여 단순한 통행 가능
102	요르단	▶ 모든 외국인 대상 7일 또는 14일 자가격리(9.29.) ※ △Green 및 Yellow 국가 출발의 경우 7일, △Red 국가 출발의 경우 14일 자가격리(우리나라의 경우 Green 국가로 분류되나 요르단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경유지에 따라 격리기준이 달라짐) ※ △출발지 출국 전 요르단 관광청 홈페이지(visitjordan.gov.jo)를 통해 전자신고서 제출 후 QR코드 수령(5세 이하 면제), △출발지 출국 전 120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(5세 이하 면제), △입국 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, △건강상태확인서 및 위치확인서 제출, △체류 기간 동선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, △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 등
103	우간다	▶ 엔테베 국제공항과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출발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- 음성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2020.10.01.부터 자가격리 면제(음성확인서 미소지자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의 경우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비용 자부담) - 모든 출국자의 경우 120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0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※ 선교사, 봉사단 등 여타 목적의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추후 통지 예정
104	우루과이	▶ 모든 외국인(영주권자 제외) 입국금지(3.24.) ※ 단, △우루과이 거주 외국인, △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, △외교관, △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, 선박, 항공기의 승객, △난민, △가족 간 재회의 사유, △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, 경제적,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가능(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실시)(6.8) ※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RT-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, 코로나19 방역정보 앱 ‘Coronavirus UY’ 설치 권장 - 상세한 조건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▶ 3.30.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(3.28)
105	우크라이나	▶ 9.28.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 ※ 단, 코로나19 치료비용(격리비용 포함)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필요 ※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가격리 시행 기준 상 최근 14일 이내 레드존 국가(한국은 그린존 국가)를 방문 후 입국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시행(6.15) * 국가 리스트 : https://moz.gov.ua/uploads/5/26701-161020.pdf
106	이라크	▶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로 모든 입출국 정상화(7.23.) ※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(8.17.) ※ 기업 직원은 입국 후 소속기업 사업장 내에서, 외교관 및 공식출장단은 소속 공관 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▶ (쿠르드지방정부) 외국인 입국 허용(7.23.) ※ 도착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제시 또는 자비부담 PCR 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(서약서 작성) -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된 대표단, 출장자 및 단기 관광객은 자가격리 불요
107	이란	▶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※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(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) ※ 8.2.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(노동, 유학,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)
108	이스라엘	▶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그린국가를 제외한 레드국가(코로나19 위험국가)를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지정시설(또는 자가)에서 14일간 격리 조치 ※ 한국은 10.15.부터 그린국가로 분류되어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14일 격리 조치 면제 ※ 입국허가 관련, 해당 국가 주재 이스라엘대사관에서 입국허가서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, 항공기 탑승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보건부에 개인정보 및 건강확인서 양식을 기입하여 제출 필요
109	이집트	▶ 9.1.부터 항공, 육로,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현지도착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(영문 또는 아랍어) 제출(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)의무 - PCR 검사 음성확인서에는 검진 기관 도장, 검체 채취 방법, 검체 채취 시간, 검사 유형(RT-PCR) 등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 ※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(샤름엘셰이크, 후루가다, 타바, 마르사알람, 마르사마트루)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,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(30\$ 자부담)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 ※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.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
110	이탈리아	▶ 7.1.부터 한국 포함 EU+ 역외국가(한국, 호주, 캐나다, 조지아, 일본, 뉴질랜드, 르완다, 튀니지, 우루과이, 태국) 대상 입국 제한 완화 ※ △입국 시 입국사유 신고서 제출,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입국 후 지역 보건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당국에 통보 및 등록(전화, 인터넷) ※ 스페인, 프랑스, 영국, 네덜란드, 벨기에, 체코 방문 후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전수 검사 -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검사 면제 ※ △자국민(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)은 입국금지 국가로부터도 입국이 가능하나 자가격리의무나 검사의무는 동일함 ※ 업무·건강·학업·기타 필수적 사유인 경우 입국 가능 - △입국자 전원 출발 시 여행 목적, 주재국 내 거주지 주소(자가격리 장소), 해당 장소 이동 차량,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체(항공사 등) 제출 필수, △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, 체온측정, 마스크 착용 권고, △체온 37.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, △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,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, △입국자 전원(무증상자 포함),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, △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,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(관련 비용은 자부담) - 격리의무 예외 : 업무·건강상 필수 목적의 단기체류자(120시간 이내 체류자) 및 항공기 승무원 등
111	인도	▶ 국제선 여객기 운항 중단(5.25.) ▶ (신규비자 제한적 발급) 인도 입국 불가피성 입증 및 탑승권 제시 필요(6.2.) ※ 고용·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※ 비즈니스(스포츠용 B-3비자 제외)·고용(동반가족 포함)·프로젝트·저널리스트(동반가족 포함) 비자 이외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▶ (격리조치)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라 조치(5.24.) ※ 원칙적으로 격리기간은 14일(시설격리 7일, 자가격리 7일)이나, 8.8.부터 출발 전 72시간 전에 포털(www.newdehliairport.in)에 self-declaration,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출발전 96시간 내 발급)를 제출하면 시설격리는 면제되어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 (자세한 내용 주인도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 (8.3.) -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반드시 소지 ▶ (코로나19 음성 확인서)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, 비자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하며,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(3.10.)
112	인도네시아	▶ 4.2.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(3.31) ※ (예외 입국 대상) △장기체류허가(KITAS/KITAP)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△외교비자/관용비자 소지자, △외교/관용 체류허가 소지자, △의료,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, △육로/항만/항공 수송기 종사자, △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※ (입국 방역조치) △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, △건강확인서 미소지,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,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, △신속진단 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, 음성이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 ※ (입국 후 관리대책) 14일 동안 자가격리 (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)
113	일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미국 등 15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※ 다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허가 ① 8.31.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- 한국 등 체류 중인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교부받은 「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」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 ② 9.1.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- 일본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「수리서」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(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되며,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, 수리서 및 검사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고) ③ 다음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, 한국 등 체류하는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사증 발급 및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(입국 목적 등에 따라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 필요) - 8.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출국한 외국인 중, 입국 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그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능했던 경우 - 일본인 · 영주권의 배우자 또는 자녀 -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, 가족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경우 - 교육 · 교수 · 의료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- (10.1.부터 입국) 사업상 필요한 인재, 유학, 가족 체재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는 경우 ※ 필요 서류 및 상세 수속 등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또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※ 이외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허가 ※ △특별 영주권자, △외교 및 공무 체류자격자는 「검사증명」 없이 입국 ▶(시증 제한) 추후 공지 시까지 △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 등에 대한 시증면제조치 정지 ▶(검역 강화)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(일본인 포함)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,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▶(항공기 도착공항) 중국 및 한국에서의 여행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·간사이공항으로 한정
114	자메이카	▶ 6.15.부터 국제 공항 및 항구 운영 재개 ※ 10.10.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사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 또는 항원 검사) 소지 의무 ※ 사전에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(visitjamaica.com)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 -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,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(14일간 자가격리) -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(숙소에서만 체류 가능/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) -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(체류하는 숙소로 즉시 이동 후 동 시설에서만 체류 가능)
115	잠비아	▶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(가능하면 72시간 이내)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(미지참 시 입국거부) 및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※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 실시 ※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※ 단수비자(도착비자) 발급 재개
116	적도기니	▶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(6.12) ※ 모든 국제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점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- 미지참시 검사비용 지불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박시설 대기 - 48시간이 지난 음성확인서 소지자 입국 불허하나, 출발국가에 따라 허용 - 위조가 의심되는 음성확인서 제출 경우, 입국 시 공항에서 추가 검사 실시 예정 ※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(편명, 출발지 등)를 포함한 소속직원(가족 포함)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
117	조지아	▶ 국경봉쇄 및 외국인 입국금지(6.25.) ※ 단,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,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, 14일 자가격리 또는 매 72시간마다 PCR 검사 실시 중 택일 가능 - 14일 자가격리 및 PCR 검사 비용 모두 방문객 본인 부담으로, 매 72시간마다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다 PCR 검사를 선택할 경우 격리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, 비즈니스 목적 방문은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(www.stopcov.ge)에서 사전 신청하고, 조지아 정부 승인 후 입국 가능		
118	중국	공통	▶ 3.28.(토)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, 단,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*을 소지한 외국인은 9.28(월)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* 취업류(Z), 동반 등 개인사무류(S1), 친지방문류(Q1) - 외교, 공무, 의전 비자 또는 C비자(승무원 등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 - 그린카드(영주권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 -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,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,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,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▶ 아울러, 한국인의 경우, 8.5.(수)부터 △취업, △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△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, 9.28.(월) 0시부터 △취업류(Z), △동반 등 개인사무류(S1), △친지방문류(Q1)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※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,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visaforchina.org)를 통해 가능 ▶ 9.9.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(72시간) 내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(PCR)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 ※ 상세 실시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- 영사 및 비자 업무란 공지문 참고 ▶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(4.1) ▶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※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- 최근 각 성·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,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,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	
		1	간쑤성	▶ 간쑤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(비용 자부담) ※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,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
		2	광둥성	▶ 광둥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※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(1~2회) 핵산검사 실시 ※ 중국 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,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
		3	광시좡족자치구	▶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※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,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
		4	구이저우성	▶ 구이저우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(최근 14일 내 해외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
		5	네이멍구자치구	▶ 네이멍구자치구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(비용 자부담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- 단,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, 도착 후 14일간 격리(지정시설 또는 자가) 후 핵산검사 재 실시 요망
		6	닝샤후이족 자치구	▶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3.16)
		7	랴오닝성	▶ 랴오닝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(비용 자부담)(4.14) ※ 지역별로 7-14일간 추가 자가격리 - (선양시) 선양시로 도착한 선양시 거주자의 경우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
		8	베이징시	▶ 베이징시 도착시 , 6.8.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(환승객 포함)은 16개 지정공항(텐진, 스좌좡, 타이위안, 후허하오터, 지난, 칭다오, 난징, 선양, 다롄, 정저우, 시안, 청두, 창사, 허페이, 랴오닝, 우한(예비)) 경유지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우회 진입만 가능(모든 비용 자부담) - 해외입국자는 경유지나 목적지에서 14일간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 실시(4.30) ※ 입국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 및 거주단지에 사전보고, 입국 시 공항, 역,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(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) ※ 4.30.부터 호텔 투숙시, 핵산검사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지만, 젠강바오(健康宝) 그린 바코드를 제시해야 체크인 가능(호텔에 사전 연락하여 투숙시 필요사항 문의 요망)
		9	산둥성	▶ 산둥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3.31) ※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,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,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(3.27) ※ 3.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,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※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(기 입국자 사후 신고) 중이며, 시/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(주민위원회)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△핵산검사 음성 판정, △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, △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(자가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)
		10	산시성 (陝西省)	▶ 산시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(비용 자부담)(9.15) ※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,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다더라도 산시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
		11	산시성 (山西省)	▶ 산시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5.19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
		12	상하이시	▶ 상하이시 도착시 ,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,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, 자가격리 조건(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,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)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(단,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) -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
			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,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 -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,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※ 단, 노인, 미성년자, 임산부, 거동이 불편한 자,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,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,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신청 가능 ※ 3.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
13	시짱자치구		▶ 시짱자치구 도착 전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(6.8) ※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 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
14	신장위구르 자치구		▶ 신장위구르자치구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6.8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도착하는 인원내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 실시
15	쓰촨성		▶ 쓰촨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(모든 비용 자부담)(3.27) ※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※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,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※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,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
16	원난성		▶ 원난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(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26) ※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,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※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, 호텔,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※ 원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※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(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, 기타 통로 폐쇄)
17	장시성		▶ 장시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하여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양성판정자 및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(모든 비용 자부담)(3.25)
18	장쑤성		▶ 장쑤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지역별 조치 상이)(3.23)
19	저장성		▶ 저장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)(3.18) ※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,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(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QR코드 참고)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/ 이미 입국한 경우,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
20	지린성		▶ 지린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1) ※ 지역별로 7-14일간 추가 자가격리 ※ (창춘시) 창춘으로 도착한 창춘 거주자의 경우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 ※ 만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영유아,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,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※ 3.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 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,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	
				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, 이 외 이동 비용·핵산검사·폐 CT검사 비용은 무료
		22	충청시	▶ 충청시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, △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(비용 자부담)(3.26)
		23	칭하이성	▶ 칭하이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6.8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- 단,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
		24	텐진시	▶ 텐진시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(입국 시 1회, 격리 기간 중 1회) 실시(비용 자부담)(6.5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텐진시로 이동 가능 - 단,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
		25	푸젠성	▶ 푸젠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(단,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)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,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(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) ※ 일부 지역에서는 핵산검사 3회 실시 및 별도 혈청검사 실시
		26	하이난성	▶ 하이난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,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
		27	허난성	▶ 정저우시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(3.29) ※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,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※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/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
		28	허베이성	▶ 허베이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 ※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- 단,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,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
		29	헤이룽장성	▶ 헤이룽장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,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(비용 자부담) ※ 지역별로 7-14일간 추가 자가격리 ※ (하얼빈시) 하얼빈시로 도착한 하얼빈시 거주자의 경우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 ※ 운송수단 승선 검역,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, 체온 측정, 역학조사, 샘플 채취,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※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
		30	후난성	▶ 후난성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(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
		31	후베이성	▶ 우한시 도착시 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,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
119	중앙아프리카 공화국	▶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후 입국 시 21일간 자가격리 ※ 입국 시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체온 검사, 개인소지품 소독,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
120	지부티	▶ 7.17.부터 국경(육해공) 재개방 ※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
121	짐바브웨	▶ 모든 외국인 대상 △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권장, △유증상 시 격리시설로 이송되거나, 자가격리 예정인 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, △입국일로부터 7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※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있더라도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실시(60\$, 자부담) ※ 10.1.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(도착비자) 발급 재개
122	차드	▶ 입국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7일간 자가격리(7.30.) ※ 입국 7일 후 코로나19 PCR 검사 재실시
123	칠레	▶ 10.29.까지 모든 외국인(시민권자 및 영주권자,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) 대상 입국금지(9.25.) ※ 입국 가능 대상자 14일 의무격리 면제 절차 신설 및 발표(8.30.) ※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※ 외교관, 정부대표단, 선박 및 항공 승무원 등은 주한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가능 ※ 환승 및 출국은 가능(4.22.)
124	카메룬	▶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4.30) ※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(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) - 카메룬 도착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- 카메룬 항발 항공기 탑승 시, 탑승 중 마스크 항상 착용(음식/음료 섭취, 약품 복용시 제외)
125	카보베르데	▶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(10.12.)
126	카자흐스탄	▶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(6.29.) ※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, 환승 제한 규정 폐지(9.18.) ▶ 10.6.부터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입국 불허(10.3.) ※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경우, 입국 후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
127	카타르	▶ 8.1.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(한국 포함 40개국)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(7.21.) ※ 입국 허가 신청 필요(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 ※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,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, 7일간 의무 자가격리 ※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, △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, △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 ※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, 입국 허가를 받아 지정된 호텔(사전 예약 필수)에서 최소 7일 의무 격리(입국 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연장 가능)
128	캄보디아	▶ 3.30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※ (코로나19 음성확인서)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, 비행기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(3.31.) -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 ※ (입국 절차)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, 코로나19 진단검사,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하며,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,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(6.15.) - △전체 승객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, △한명이라도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은 캄보디아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격리(5.20.)
129	캐나다	▶ 10.31.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9.28.) ※ 10.8.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-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, △가족의 임종, △위독한 사람의 간병, △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, △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※ 10.8.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-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, △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, △성년 자녀, △성년 자녀의 자녀, △형제자매, △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, △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(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) ※ 10.20.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예정 -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,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※ 6.8.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- △코로나19 무증상자로, △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, 사실혼 관계자,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, (양)부모,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, △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 충족하여야 함(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) ※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,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※ △항공기 승무원, △외교관, △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(캐나다내 국내선 경우 불가) ※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, 구체적 예외 해당자,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, 유증상자의 캐나다-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(http://overseas.mofa.go.kr/ca-ko/index.do) ※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※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※ 11.21.까지 캐나다-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(10.19.) ※ 3.26.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
130	케냐	▶ 8.1.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(7.30.) ※ 입국 시 △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코로나19 증상(기침, 발열, 호흡기 증상)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(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) -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(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,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, 여권번호,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) -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(https://bit.ly/covid19month)에 접속,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(핸드폰 또는 출력물) ※ 통행금지 시간(오후11시~익일 오전 4시)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(탑승권 등)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
131	코모로	▶ 케냐, 탄자니아, 에티오피아 등 이웃국가 대상 항공운항 재개(9.7.) ※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※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4일간 격리
132	코스타리카	▶ 한국 포함 52개국 및 미국 24개주(뉴욕, 캘리포니아, 텍사스 등)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적 허용 ※ △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지역에서 최소 14일간 체류, △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및 항공기 탑승 최대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(영어, 스페인어만 인정)를 시스템상 제출(서면제출 불가), △코스타리카 보험공사(INS)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(입원비)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, △코로나19 증상 미발생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10.26.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조건 삭제 예정 - △모든 입국자는 코스타리카 입국 전 전자 자가진단서 제출 필요, △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(NIS) 보험 등 코로나19에 대한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필요 ※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▶ 11.1.부터 코스타리카 이민당국에서 발표한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 예정
133	코트디부아르	▶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(7.1.) ※ 입국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7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- (항공여행 증명서) 홈페이지(deplacement-aerien.gouv.ci)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(수수료 2,000 FCFA 지불) -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
134	콜롬비아	▶ 9.21.부터 7개국(미국, 멕시코, 브라질, 에콰도르, 볼리비아, 과테말라, 도미니카 공화국) 간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허용(단, 육상 및 해상 국경 봉쇄는 유지) ※ △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, △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(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), △콜롬비아 보건부의 CoronApp 설치 -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
135	콩고공화국	▶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(6.6.)
136	쿠바	▶ 모든 외국인(관광객)의 입국 금지(3.31.~) (단,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)
137	쿠웨이트	▶ 8.1.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* 외 제3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하고 PCR 음성 확인서(72시간 이내 발급) 제출 시 입국 허용(8.1) *방글라데시, 필리핀, 인도, 스리랑카, 파키스탄, 이란, 네팔, 중국, 브라질, 콜롬비아, 아르메니아, 시리아, 스페인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이라크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칠레, 이집트, 레바논, 홍콩, 이탈리아, 북마케도니아, 몰도바, 파나마, 페루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코소보, 도미니카, 프랑스, 예멘, 아르헨티나 ※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9월 1일 이후 쿠웨이트를 출국했더라도 유효한 쿠웨이트 거주비자 및 Civil ID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(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)
138	룩셈부르크	▶ 외국(뉴질랜드 제외)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4~.) ※ 룩셈부르크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
139	크로아티아	▶ 11.2.까지 한국 포함 비EU 및 비셴겐협약가입국 대상 입국 제한적 허용(10.16) - (관광경제활동유학 목적 입국자) △입국목적 증빙(숙소예약 확인서, 유학 증빙서류 등), △검체 채취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 제출(미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) - (긴급목적·인도적 사유 등 입국자) 14일간 자가격리 원칙(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확진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) - 일반 방문의 경우 개인 거주지에 체류할 목적의 입국은 불가, 숙소 예약확인서 등 증빙 필요, 개별 입국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내무부 웹사이트(http://mup.gov.hr/uzg-covid/286210)에서 확인, 온라인출입국심사(https://entercroatia.mup.hr)에 개인 입국정보를 사전 등록 ※ 제3국 국민(EU,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) 중 △체류허가 소지자, △의료인, △경유자, △접경지역 근로자, △필수재화 화물기사, △군인, △경찰, △재난관리본부 직원, △외교관, △상용/인도적 목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 입국 가능 ※ 육로 경유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혹은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나 12시간 내 출국 필수(최종 목적지 국가로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)
140	키르기스스탄	▶ 10.5.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 소지 의무화 시행(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경우 입국 불허) ※ △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(3일)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, △육로 입국의 경우 출발 전 120시간(5일)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소지
141	키리바시	▶ 3.20.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(5.4.)
142	타지키스탄	▶ 타지키스탄 정부 발행 입국 허가서, 비자,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입국 96시간 이전 발급) 소지자는 입국 가능(8.18.)
143	탄자니아	▶ 8.5.부터 모든 여행객(복귀 거주자 포함)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,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
144	태국	▶ 7.1.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- △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, △태국인의 배우자, 부모 또는 자녀, △태국 영주권자, △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, △여행객기 승무원, △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, 학부모, △의료목적, △외교단, 국제기구,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, 부모, 자녀, ※ (태국 입국 전 조치) △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, △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(COE), △비행적합 건강증명서(Fit-to-Fly Health Certificate), △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CR 방식), △10만불 이상의 치료비(코로나19 치료 포함) 보장 보험가입증명서, △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, △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(태국 입국 후 조치) △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, △필수지참서류 제출, △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, △정부 지정 호텔(ASQ)에서 최소 14일간 격리(자부담) 및 관련 규정 준수, △RT-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
145	토고	▶ 모든 입국자에 대해 5일 이내 검사받은 COVID-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) ※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(https://voyage.gouv.tg/checkphone) 작성 (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-19 PCR 검사 신청,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) 완료 필요 ※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-19 PCR 검사 의무 실시,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(30일간)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(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)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 ※ 양성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음성 판정시까지 격리 (발생된 모든 비용은 자부담) (10.8일 기준) ▶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(입국)입국전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, △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(http://www.voyage.gouv.tg)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, △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, △코로나 검사 실시, 음성일 경우 입국허용(출국)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
146	통가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0.) ※ 자국민,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
147	투르크메니스탄	▶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(투르크멘바시 지역 격리소)에서 격리 및 재검진 조치
148	투발루	▶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※ 예외적인 조건(의약품, 인도주의 등)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
149	튀니지	▶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(8.19) - 모든 국가 출발자는 탑승 기준 72시간 내 발급(120시간 내 도착)받은 확인서 제출 ▶ 한국 출발시 도착 후 호텔 격리(9.28부터 적용) - 입국자 출발국의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3개 국가군으로 분류, 격리 등 조치 - 한국은 9.28부터 중위험국(황색)으로 재분류, 입국 후 7일간 호텔 격리 후 PCR 검사 실시,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- 특히, 고위험국(적색)을 경유한 튀니지 입국은 불가한바 최소 중위험국(황색)을 경유하여 입국
150	트리니다드토바고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3.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※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(5.9)
151	파나마	▶ 10.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 ▶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 결과 확인서(PCR 또는 항체검사)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(10.12.) - 음성결과 확인서 미제출 시, 입국전 신속진단검사를 시행(\$50 USD 자가 부담), △음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불요, △양성 판정일 경우 지정시설 내 14일간 자가격리 ※ 격리 중, 7일차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시행, 음성판정일 경우 격리 종료, 양성일 경우 남은 격리기간 완료 필요
152	파라과이	▶ 10.21.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(육로 입국의 경우 10.15.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상업·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) ※ 14일간 자가/격리 시설/지정 호텔에서 격리 -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7일(격리 7일 째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격리해제, 검사비용 자부담) -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7일 미만 체류 시 자가격리 불요 ※ 여행자 보험(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 포함) 의무화 ※ 파라과이-브라질 육로국경으로 입국 시 입국 지점으로부터 30km까지 이동 허용, 24시간 이상 체류 금지
153	파키스탄	▶ 파키스탄발 국제 항공편 일부 운항 재개(5.30.) ※ 입국 시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(보건 당국이 모니터링),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운영 격리 센터(무료) 또는 지정 호텔(자부담)에서 격리 ▶ 10.5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에 속한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- 10.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(10.2) ※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 ※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
154	파푸아뉴기니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22.) ※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만 입국가능(6.17.) ※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음성결과 필요(7.20) - 동 진단검사는 '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반응법(Real-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)' 검사만 인정 ※ 모든 입국자 대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(비용 자부담) - 단, 호주(빅토리아주 제외), 뉴질랜드, 솔로몬제도, 바누아투, 피지, 키리바시, 마셜제도, 통가, 투발루, 나우루, 마이크로네시아, 쿡제도, 사모아, 팔라우, 니우에에서 7일간 격리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(10.3.)
155	팔레스타인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156	페루	▶ 10.5.부터 중남미 역내 7개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입국 가능 ※ 단, △거주증 소지자, △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(사전에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) - 여행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(PCR) 지참, 여행자 건강상태확인서 및 자각격리 관련 서약서 작성, 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-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
157	피지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(5.4.)
158	필리핀	▶ 3.22.부터 특정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9.) ※ 외교비자(9E) 소지자, 이민비자(영주권 등) 소지자,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, 승무원은 입국 허용 ※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(검사 비용 자부담),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(5.6.)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- 지정 호텔에 격리할 경우 입국 전 예약 필요 ※ 입국 시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시설/호텔 격리는 해제되나,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격리(단, 기간 및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)(5.6.)
159	헝가리	▶ 11.1.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※ 단, 영주권,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(입국 시 14일 자가격리) ※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(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,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) ※ 외교, 공무 목적 입국 가능 ※ 쉥겐협약을 따르고,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,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(단,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)
160	호주	▶ 3.20.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(3.19.) ※ 영주권자,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, 3.29.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※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(5.14.) - 대기시간 8-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(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) - 단, NSW주에서 8-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- 주(州)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, 연방정부, 보건당국,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※ 10.16.부터 뉴사우스웨일즈, 북부준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 예정(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) -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
161	홍콩	▶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(4.6.) ※ 6.1.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-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,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 환승은 불가 -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, 승객 간 1.5m 거리 유지 ※ 중국, 마카오,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 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, 입국 후 14일간 자가/호텔 격리(4.6.) ※ 입국 후 △코로나 19 검사 실시,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격리 중 전자 손목밴드 착용, △고위험국가*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* 방글라데시, 인도, 인도네시아, 네팔, 파키스탄, 필리핀, 남아공, 카자흐스탄, 에티오피아, 영국, 미국 ※ 외교관, 정부대표단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격리면제(7.29.)

※ EU 회원국(27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크로아티아 (밀줄 국가는 非셥겐협약 가입국)

※ 쉥겐협약 가입국(26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(밀줄 국가는 非EU 회원국)

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: 26개 국가지역

※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조치 해제 국가지역(해제 시기)
유럽	▶ 그리스(7.1.)^①, 네덜란드(7.1.)^②, 라트비아(7.1.)^③, 루마니아(8.5), 룩셈부르크(7.1.)^④, 리히텐슈타인(7.20.), 몬테네그로(5.30.)^⑤, 몰타(7.11.), 벨기에(9.23.)^⑥, 북마케도니아(6.26.), 불가리아(7.16.), 사이프러스(4.20.)^⑦, 세르비아(5.22.)^⑧, 스위스(7.20.)^⑨, 슬로바키아(7.6.)^⑩, 슬로베니아(9.29.), 알바니아(7.1.)^⑪, 에스토니아(7.6.), 오스트리아(9.28.)^⑫, 우즈베키스탄(9.21.)^⑬, 체코(7.13.)^⑭, 터키(6.11.), 포르투갈(7.1.), 폴란드(7.3.)^⑮, 프랑스(7.3.)^⑯, 핀란드(7.27.)

- ① 그리스 :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(<http://travel.gov.gr/#/>)에서 입국 24시간 전 △출발 국가, △최근 14일간 방문한 국가, △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(Passenger Locator Form) 제출(이메일로 QR 코드 수신,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), 알바니아·불가리아·루마니아·북마케도니아·헝가리·몰타·벨기에·스페인·이스라엘·UAE에서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- ② 네덜란드 : 입국 시 검역설문지(Health Certificate) 지참 필요
- ③ 라트비아 :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.lv 접속, 질문서 작성(QR코드 부여)
- ④ 룩셈부르크 : 단, 거주증명 필요
- ⑤ 몬테네그로 : 몬테네그로 정부 보건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(상세 목록은 주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
- Green(입국허용), Yellow(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요), Red(외국인 입국 불허)
- ⑥ 벨기에 :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벨기에로의 무비자 비필수목적 여행(관광 등)이 가능
- ⑦ 사이프러스 :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(www.cyprusflightpass.gov.cy)에서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승객위치질문서 등 제출 필수(승객위치질문서 제출 시 입국여부 확인 가능)
- 사이프러스 북부는 터키 점령지역으로, 사이프러스 정부는 제3국민의 니코시아(수도) 경유 북부 지역 이동 불허
- ⑧ 세르비아 : 주변 4개국(크로아티아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북마케도니아)에서 입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
- ⑨ 스위스 : 스위스 연방 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/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(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)에서 10일간 격리(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, 24시간 이내로 경유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)
- ⑩ 슬로바키아 :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국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및 자가격리 의무(입국 후 5일 이후 진단검사 실시,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)(10.1부터 고위험국 명단 수시 변경)
- 고위험국 : 아래 저위험국(지역)을 제외한 모든 국가
- 저위험국 : 한국, 호주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중국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그리스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일본, 캐나다, 리히텐슈타인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헝가리, 모나코, 독일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폴란드, 오스트리아, 슬로베니아, 스웨덴, 스위스, 이탈리아, 영국, 산마리노, 대만, 교황청
* 단, EU회원국인 고위험국만 방문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소지 시 신고의무 및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 적용
- ⑪ 알바니아 : 단,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,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(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만 이착륙 허용),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
- ⑫ 오스트리아 : 2021.3.31.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(10.17)
※ (안전국가에서 입국시)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
- 단,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
※ (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시) 입국 금지(단, 오스트리아 및 EU/EEA/스위스 국적자 및 동 국가 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, 아래 입국제한 조치 부과)
-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시: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
- 위험국가에서 입국시: 자가격리 실시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
※ 한국은 9.28.부터 안전국가로 분류(안전국가 및 위험국가 관련 내용은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)
※ (주의) 단순 경유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입국시, 최종 도착국(EU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)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필수 지참
- EU역내국가간 입국규정이 상이하여, 일부 국가의 경우 무사증 입국으로 간주하여 입국 거부 및 출국시 벌금부과 사례 발생
-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'경유 확인서' 작성 및 제출 의무
- ⑬ 우즈베키스탄 : 한국 포함 녹색 국가(항공기 탑승 전 14일 이상 해당 국가 체류 조건)에서 출발 시 별도 조치 없음(방역등급 재조정 시 입국관련 조치 변동 가능하므로 주의 필요)
- ⑭ 체코 : 9.21.부터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체코 정부가 분류한 위험국에 체류한 자는 9.21.부터 입국시 △사전신고(www.prijездovýformular.cz), △자부담으로 입국 후 PCR 검사 필요
- 위험국 : 아래 저위험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
- 저위험국 : 안도라, 호주, 벨기에, 불가리아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크로아티아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이태리, 일본, 캐나다, 대한민국, 사이프러스, 리히텐슈타인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헝가리, 몰타, 모나코, 독일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오스트리아, 그리스, 산마리노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웨덴, 스위스, 태국, 튀니지, 바티칸, 영국
- ⑮ 폴란드 : 벨라루스, 러시아, 우크라이나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및 주재국 정부가 고시한 항공운항금지국가에서 입국 또는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비필수적 목적(관광 등)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
- ⑯ 프랑스 : 프랑스령 폴리네시아·뉴칼레도니아·왈리스 푸투나·마요트의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, △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, △가족·직업·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, △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요